

노인보호사업의 현재와 미래

양 철 호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요약) 우리나라에서 노인 학대에 대한 보고가 처음 문헌에 등장한 시기는 1980년대이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생기기 전부터 노인 학대를 다루는 기관들이 있었으며, 이제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전문적으로 노인 학대를 다루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래에도 노인 학대의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노인 학대에 대한 의식의 변화 및 신고 건수의 증대는 노인보호사업 10년의 성과라고 볼 수 있다. 현행법의 부양의무는 가난에 대한 국가의 의무회피이지만, 효 사상에 근거한 부양의무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노인 학대의 주된 원인은 노인빈곤 및 부양의 책임이므로 이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Key words: 노인보호사업, 노인부양의무, 노인 학대]

본고는 전라남도 주최 및 전라남도 노인보호전문기관 주관으로 2014년 10월 29일 전남 순천시 문화건강센터에서 개최된 ‘전라남도 노인보호 10주년 기념행사’의 기조강연을 위해 저자가 준비했던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이 논문에 관한 일체의 서신왕래는 (우) 520-714 전라남도 나주시 건재로 185번지 동신대학교 보건복지대학 사회복지학과 양철호 교수 앞으로 하시길 바라며, 저자의 e-mail 주소는 drchyang@daum.net이다.

노인보호사업의 과거

우리나라에서 노인 학대에 관한 보고가 처음으로 문헌에 등장한 것은 30여 년 전이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생기기 전에는 ‘한국노인의 전화’를 비롯한 노인 관련 단체들과 2000년에 개관한 (재)천주교예수의까리파스수녀회의 노인학대상담센터 등에서 단편적인 노인보호사업을 산발적으로 수행해 왔다. 그러던 중 2002년 대통령령에 의해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 곳곳의 인권침해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용역을 발주하였는데, 노인 학대 분야는 ‘한국노인의 전화’에서 맡아 전국 노인 학대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당시 노인 학대에 관한 실태 연구는 학대 피해를 당한 노인을 가려내기 위한 노인대상 일반면접조사와 학대 피해를 경험한 노인 대상 심층면접조사, 그리고 노인 학대에 대한 전 국민의 의식을 알아보기 위한 전화조사를 실시한 것이었다. 이 연구는 조사비용과 시간의 제약으로 인하여 노인 학대의 전반적인 실태를 보여주는 데는 어려웠지만, 지역적으로 진행되어 온 연구들과 달리 노인 학대의 개념을 정리하고 전 국민의 노인 학대에 대한 의식과 전국적인 노인 학대 실태를 파악한 것 이외에도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태동을 이루어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었다(양철호, 2004).

상기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외국의 사례, 아동 학대의 유형 등을 참고하여 노인 학대의 개념을 정리하고 유형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1) 신체적 학대(폭력행위를 수반한 신체적인 고통이나 상처, 손상, 질병 등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뺨을 때리는 것에서부터 살인에 이르기까지의 행동), 2) 언어적 학대(언어적으로 괴롭히거나 호되게 꾸짖거나 처벌이나 박탈의 위협을 가하는 것, 모욕을 주는 것), 3) 정서적 학대(가족 내에서의 무시로 인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 또는 심리적 고통에 빠져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정신상태가 되게 하는 것, 정서적으로 고통을 받게 하는 것, 심하게 자존심을 건드려 노인이 집을 나가고 싶게 하거나 자살의 충동을 느끼게 하는 것), 4) 경제적 학대(노인의 돈이나 재산을 동의 없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 그리고 5) 방임 학대(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책임

노인보호사업의 방향

이 있는 사람이 의도적이거나 결과적으로 노인부양의 의무를 거절하거나 게을리 하는 것) 등 모두 다섯 가지로 규정하였다.

그 이후로 2002년 12월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는 11곳과 지방자치단체나 자체 재원으로 운영되는 2곳을 포함한 전국 13곳의 ‘노인학대상담센터’가 운영되기 시작했고, 이 ‘노인학대상담센터’가 2004년 노인 학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과 긴급전화의 설치 근거를 마련한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재탄생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¹⁾ 또 2004년 1월 29일 신설된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정의)에서는 노인 학대를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노인 학대는 1991년 UN총회에서 채택한 ‘노인을 위한 UN원칙(UN Principles for Older Persons)’ 중 존엄성 영역의 17번째 항목인 “노인은 스스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되고, 육체적이나 정신적인 학대를 받아서도 안 된다.”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고 있다(정경희, 2011).

또 2002년 발표된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의 18개 과제 중 하나인 ‘유기, 학대와 폭력으로부터의 보호’도 노인 학대 관련 법령의 근거가 된다. 이 과제에서는 ‘노인에 대한 모든 형태의 유기, 학대 및 폭력 근절’과 ‘노인 학대 대응을 위한 지원서비스 신설’이라는 두 가지 권고행동 아래에 12가지의 세부행동을 제안하고 있다. 첫 번째 권고행동인

1) 제39조의5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다른 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2. 학대받은 노인의 발견·상담·보호와 의료기관에의 치료의뢰 및 노인복지시설에의 입소의뢰

3. 노인학대행위자, 노인학대행위자로 신고된 자 및 그 가정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감독하는 기관이나 시설 등에 대한 조사

4.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5. 그 밖에 학대받은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노인보호전문기관에 두는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그 설치기준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노인에 대한 모든 형태의 유기, 학대 및 폭력 근절’ 하에는 다음 7개의 세부행동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1) 노인 학대와 노인 학대의 다양한 특성 및 원인에 대해 언론이나 인식고양 캠페인을 활용하여 전문가의 인식제고와 대중교육을 실시하며, 2) 여성건강과 안녕에 해로운 과부 의식(rites)을 철폐하고, 3) 노인 학대 근절 법률의 제정 및 법률적 노력을 강화하며, 4) 노인과 관련한 해로운 전통적 관습을 철폐하고, 5) 지역사회 사업 개발 등 노인 학대에 대응함에 있어 민간단체 포함한 시민사회와 정부사이의 협력을 장려하고, 6) 유기, 학대, 폭력(특히 긴급 상황 하)에 대한 대중의 경각심을 높이고 여성 노인을 보호함으로써 위험을 최소화하며, 그리고 7) 남녀 노인에 관한 모든 형태의 폭력 원인, 성격, 정도 심각성, 결과에 관한 많은 조사연구를 장려하여 그 결과를 널리 전파함으로써 노인에 대한 모든 형태의 유기, 학대 및 폭력을 근절하도록 한다.

두 번째 권고행동인 ‘노인 학대 대응을 위한 지원서비스 신설’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5개 세부행동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1) 학대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 및 재활제도를 도입하고, 2) 의심되는 노인 학대를 보고하도록 일반 대중 뿐 아니라 전문가들도 장려하며, 3) 의료 및 사회서비스 전문가들이 학대로 고통 받는 노인들에게 어떠한 보호와 지원이 제공될 수 있는가를 알리도록 장려하며, 4) 보호전문직 훈련에 있어서 노인 학대 대처방법을 포함하도록 하고, 그리고 5) 노인들에게 소비자 사기에 대한 교육 안내 프로그램 도입함으로써 노인 학대 대응을 위한 지원시설 서비스를 신설해가도록 한다(정경희, 2013).

현재의 노인보호사업은 노인 학대에 대한 대처 및 예방을 물론 노인인권을 보호하는 범주까지로 확대되었다. 이는 2011년 6월 7일 개정된 노인복지법 제39조 5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²⁾을 보아도

2)제39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노인인권보호 관련 정책제안
2.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3. 노인학대 예방의 홍보, 교육 자료의 제작 및 보급
4. 노인보호전문사업 관련 실적 취합, 관리 및 대외자료 제공

노인보호사업의 방향

확인할 수 있다. 즉,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 학대의 신고접수부터 현장조사, 학대피해노인 및 가족에 대한 통합적 지원, 노인 학대의 예방교육 및 홍보, 학대피해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등을 담당하는 노인 학대와 관련하여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기관인데,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사후개입 뿐만 아니라 노인의 권익과 관련된 적극적 역할을 하도록 명시한 것이다.

노인보호사업의 현재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 학대에는 자기방임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에서는 <표 1>처럼 노인 스스로에 의한 자기방임까지 노인학대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으며(보건복지부, 2014a), 이는 노인의 기본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된 학대사례 건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표 2>에 소개된 바처럼 초창기인 2005년에 비해 약 70% 정도 증가했다(보건복지부, 2014b). 그러나 다양한 언론 매체에서 보도된 것처럼(예, “고령화시대의 명암..노인학대 5년 새 1,000건 급증”, 뉴스토마토, 2014. 10. 11.; “급증하는 노인 학대, 가해자는 누구?”, 아이뉴스, 2014. 10. 14. 등) 노인학대가 급증했다고 보기 보다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이 2005년 17개소에서 2013년 24개소로 증설된 것에 따른 자연 증가분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교육 및 홍보활동에 의한 증가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표에는 제시하지 않았지

5.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관리 및 업무지원

6.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심화교육

7. 관련 기관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8. 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보호·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둔다.

1. 노인학대 신고전화의 운영 및 사례접수

2. 노인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3. 피해노인 및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

4. 피해노인 가족 관련자와 관련 기관에 대한 상담

양철호

만, 2005년과 2006년까지는 전체 신고접수 사례 중 학대사례가 차지하는 비중이 과반수였지만, 2007년부터는 그 비중이 점차 감소하여 2013년에는 34.6%로 감소하였다. 또 재신고 비율도 역시 학대사례 대비 2009년에는 10.1%까지 증가했으나, 2010년부터 감소 추이를 보이며 2013년에는 6.0%로 나타나고 있어서 언론의 보도는 과장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 연구 및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노인 학대의 가해자 및 피해자의 특성도 다양함을 알 수 있다. 먼저 가해자들의 경우 경제적 수준이 낮거나 직업이 없는 것 등으로 인한 부양 스트레스가 매우 심

〈표 1〉 노인 학대의 행태적 분류

유형	정의
신체적 학대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 방임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출처: 보건복지부(2014a)

노인보호사업의 방향

<표 2> 연도별 노인 1학대 신고접수 현황 및 재신고 현황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학대 건수	2,038	2,274	2,312	2,369	2,674	3,068	3,441	3,424	3,520
증감 (%)	-	11.6	1.7	2.5	12.9	14.7	12.2	-0.5	2.8
재신고 건수	90	97	178	218	269	295	338	298	212

자료: 보건복지부 (2014b)

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그들의 개인적 특성도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자신이 어린 시절 학대를 당했던 경험이 있었거나, 술이나 약물에 의존하여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었거나, 우울증이나 불안 등의 정신병적 기질이 있었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었거나, 노화 과정에 대해 무지하여 노인의 요구를 잘 헤아리지 못했거나 등의 이유였다. 피해 노인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배우자 없이 자녀와 동거하거나 혼자 사는 경우, 신체적 질병이나 일상생활 동작의 제한, 치매 등으로 의존성이 높은 경우,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을 경우에 학대당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는 특히 여성노인이 피해자일 경우 더 두드러졌다(유지웅, 2011).

2013년 현재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학대신고사례 1건 당 평균 24.7회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이 중 개별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관련자 상담, 심리 및 기타검사 등의 상담서비스가 64.2%를 차지하였고, 정보제공서비스(25.3%), 복지서비스(5.5%: 국민기초수급권, 긴급복지지원, 가족지원서비스, 재가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기타자원, 후원연결 등) 등의 순이었다.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 역시 상담서비스(64.1%)와 정보제공서비스(34.0%)가 대부분이었으며 학대행위자가 학대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부하는 경우로 인해 서비스 제공이 어려웠다고 하였다(보건복지부, 2014b).

양철호

한편 2011년부터는 학대 피해 노인들의 보호를 강화하고 심신 회복을 도우며 학대 행위 재발을 예방하고 가족 관계 회복을 지원하고자 전국 16개 광역시도에 1개소씩 16곳의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다. 2013년도 현재 쉼터 입소자가 509명, 이용자가 1,019명으로 기관 당 월평균 8.0명이 입소하거나 이용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입소자를 위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로는 식사(38.2%), 건강증진, 문화여가, 사회기능회복, 심리치료 등의 프로그램(37.0%), 상담(16.7%) 등의 순으로 제공되었으며,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로는 상담(40.6%), 프로그램(26.2%), 식사(24.4%)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었다(보건복지부, 2014b).

노인보호사업의 미래

노인 학대는 학대를 당하는 노인 개인의 특성을 비롯하여 노인을 부양하는 부양자의 특성, 노인과 부양자와의 상호작용, 그리고 이들을 둘러싼 사회경제적인 환경 등에 의해 발생한다. 그러므로 노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도 역시 다각적으로 시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양철호(2004)는 노인 학대 예방 방안으로 노인 학대의 민감도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강화,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노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등 각종 예방적 접근 확대, 학대 경험 여부에 상관없이 노인을 위한 지지망의 강화, 부양가족 지지방안, 노인 학대 방지 및 개입을 위한 법적 및 제도적 장치 마련, 노인이나 노화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대신에 긍정적이고 건강한 이미지 창출, 노인의 재정적 의존성을 완화하기 위한 소득보장방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

정경희(2011)도 우리사회의 고령친화성 제고를 통한 사회경제적 맥락의 변화, 노인복지정책 강화를 통한 일차적인 환경의 변화 추진, 다양한 교육 및 홍보, 지역사회와 상시 관찰체계 구축, 노인 학대 신고 의무의 실효성 제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확충과 전문성 제고, 학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학대행위자와 피해노인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학대피해 노인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등을

노인보호사업의 방향

학대 예방 방안으로 제안했으며, 더불어 노인 학대의 개념이 노인의 생활이나 복지, 더 나아가 권리 보장에 부족하거나 적절하지 못한 행위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마련한 노인 학대 예방 방안도 시기는 다르지만 그 전에 발표된 내용들과 일맥상통하다. 즉 보건복지부(2014a)의 예방 방안을 보면, 노인 학대 사례의 발굴을 강화하는 것을 비롯하여 재신고 예방을 위한 대책 방안 마련, 생활시설에서의 학대 사례관리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노인 학대 신고의무자 대상 교육 및 홍보를 활성화하며, 학대행위자 대상 서비스 개입을 강화하며, 노인에게 의한 노인 학대 증가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며, 노인 단독 가구의 지원 및 자기방임 사례의 개입을 강화하며, 학대 피해를 당한 노인 중 치매노인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것 등이다.

그럼, 과연 왜 노인을 상대로 한 학대가 발생하는가? 그 원인이 다양하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아동학대를 예언해주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바로 가난한 삶이라고 알려져 있다(Reynolds, 2010). 역시 배우자나 연인에 대한 폭력이 발생하는 원인도 역시 가난과의 관련성이 매우 높다(Cunradi, Caetano, Clark, & Schafer, 2000). 그렇다면 노인을 상대로 한 학대도 특히 가정에서 발생했을 경우 가난과 관련성이 클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이를 역으로 표현하면, 생존을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가난하지 않다면 학대를 가하는 사람도 당하는 사람도 줄어들 수 있다는 추측이다.

현대사회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개인주의’를 지향하는 사회이며, 사회를 움직이는 기본단위는 ‘개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권은 부양의 의무만큼은 여전히 ‘가족’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설정하는 문제와도 상통한다.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어도 수급권자의 직계혈족인 부양의무자가 존재하고 부양의무자가 일정소득 이상이라면 수급권자가 될 수 없다는 기준이 정해질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

2000년도에 들어와 기존의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수정되면서, 시혜적, 보호적 차원의 제도가 권리적 성격으로 변화되었

양철호

다. 이는 빈곤층을 국가가 ‘도와주는 것’ 이 아니라 ‘권리로서 보장해주는 것’ 으로 빈곤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가 강화된 것이다. 그렇지만 이 제도는 이처럼 겉으로는 국가의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도 안을 들여다보면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동양의 ‘효 사상’ 이 결합될 경우 노인부양 문제는 여전히 가족의 책임을 강조하는 상황이 된다. 우리 문화권의 효 사상이 과거에 비해서 매우 약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싱가포르의 ‘부모부양법(일명 효도법)’ 이나 중국의 ‘노인권익보장법’ 등과 비슷한 ‘효도법’ 을 우리나라에서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최성규, 2007). 싱가포르는 1994년에 ‘부모부양법’ 을 만들었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지 않으면 부모는 부양비를 요구할 수 있고, 자식이 불응할 경우 벌금을 물리거나 1-2년의 징역에 처하는 등 매우 엄하다. 중국도 역시 2013년 ‘노인권익보장법’ 을 개정한 이후, ‘노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녀는 반드시 자주 부모를 찾아뵙거나 안부를 물어야 한다.’ 고 명시한 조항 때문에, ‘부모 문안 대행 서비스,’ 이른바 ‘효(孝) 대행 서비스’ 업체가 성행하고 있다고 한다(어경선, 2013). 우리나라에도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부모에 대한 효 의식을 되살릴 목적으로 2007년 제정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있기는 하지만, 부양 의무와 같은 강제 조항은 없고 효도를 장려하는 수준이다. 노인보호사업의 과거와 현재를 토대로 10년 후를 그려볼 때 효를 무시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2014a). *2014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 (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0152-10). 2014년 2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공동 발간.
- 보건복지부 (2014b). *2013 노인 학대 현황보고서* (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0267-10). 2014년 8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공동 발간.
- 양철호 (2004). 노인 학대 바로알기. *사회연구*, 7, 131-147.

- 여경선 (2013). 代回家看望父母. *아시아경제* (2013. 08. 23.).
- 유지웅 (2011). 노인 학대 조기발견 대책과 경찰의 역할. *치안정책연구*, 25 (1), 87-114.
- 정경희 (2011). 노인 학대와 노인인권. 2011년 8월 22일 보건복지부 주최 노인인권보호세미나 자료집 (pp. 66-73).
- 정경희 (2013). 국제적 관점에서 본 한국의 노인 학대 실태 및 정책적 대응. *보건복지포럼, 통권 200호* (2013년 6월), pp. 51-61.
- 최성규 (2007). 효도법이 제정되어야 나라가 산다. *한국효학회*, 4 9-14.
- Cunradi, C., Caetano, R., Clark, C., & Schafer, J. (2000). Neighborhood poverty as a predictor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among White, Black, and Hispanic couples in the United States: A multilevel analysis. *Annals of Epidemiology*, 10 (5) 297-308.
- Reynolds, D. (2010). The connection between poverty and child abuse, neglect. *EmxHealth* (2010-01-12). <http://www.emaxhealth.com/1506/50/35091/connection-between-poverty-and-child-abuse-neglect.html>.

(논문접수일: 2014년 9월 29일)

(수정논문접수일: 2014년 10월 27일)

(논문게재승인일: 2014년 11월 10일)